

#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「부동산등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일부 개정(법률 제16912호, 2020. 2. 4. 공포, 2020. 8. 5. 시행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(법 제37조제1항제3호)됨에 따라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 합필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78조제2항)
-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 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‘범위’가 추가 되었으므로(법 제74조제2호),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‘범위’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함(안 제130조)
- 「등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규칙안」이 제정됨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163조 삭제)

#### 4.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2항 중 “소유권의 등기”를 “소유권의 등기(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제130조제1항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제163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8조(토지의 분필·합필등기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<u>소유권의 등기</u>를 전사하고,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,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78조(토지의 분필·합필등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소유권의 등기</u>(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<u>신탁등기를 포함한다.</u>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)-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0조(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)</p> <p>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<u>제5호</u>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30조(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제6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63조(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)</u></p> <p>① <u>법 제109조에 따라 등기정보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.

1.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

2. 자료의 범위

3. 자료의 제공방식 ·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신청 내용의 타당성 · 적합성 · 공익성

2.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

3.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

③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

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제2항 각 호의 사항

2.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

3.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

⑤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었거나 협의를 성립되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 - 1394